# 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1회 (03/12)

- 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-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"임"자를 붙인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분할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.
- ⑤ 신규등록하거나 등록전환하는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 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# 2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·연(蓮)·미나리·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"전"이다.
- ② 일반 공중의 위락·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등의 토지는 "체육용 지"이다.
- ③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는 '하천'으로 한다.
- ④ 워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, 자갈땅, 습지, 황무지는 "잡종지"로 한다.
- ⑤ 연・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"유지"이다.

# 3. 다음 중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」상 지목의 설정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온수·약수·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·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"광천지"이다.
- ②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'묘지'로 한다.
- ③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·고적·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'유적 지'로 한다.
- ④ 여객자동차터미널,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'잡종지'로 한다.
- 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'대'로 한다.

# **메기랜드** 노량진캠퍼스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1회 (03/12)

## 4. 다음 중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」상 지목의 설정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용수(用水) 또는 배수(排水)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·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'구거'로 한다.
- ② 일반 공중(公衆)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'도로'로 한다.
- ③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·법요·설교·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·사찰·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'종교용지'로 한다.
-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'양어장'로 한다.
- 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·저수·도수(導水)·정수·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'하천'으로 한다.

# 5.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<u>틀린</u> 것은?(단,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)

-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한다.
-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기준으로한다.
- ③ 도로·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(땅깎기)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하다.
-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한다.
- 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한다.

# 6.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?

- 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-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 하려는 경우
-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
- ④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제32조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·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
-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하천·구거·유지·수도용지 등의 지 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
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1회 (03/12)

- 7.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다. <u>틀린</u> 것은?
- ① 경계점의 위치
-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
- ③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
- ④ 경계점표지의 종류
- ⑤ 경계점표지의 소유자에관한사항
- 8.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1필지의 면적이 0.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.1제곱미터로 결정한다.
- ② 지적도의 축척이 1,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.
- ③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.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.
-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는다.
-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면적은 좌표로써 면적을 산출한다.
- 9.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한 결과 1111.45㎡로 측정된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?
- $\bigcirc$  1111 m<sup>2</sup>
- $2 1112 \,\mathrm{m}^2$
- (3) 1111.5 m<sup>2</sup>
- (4) 1111.4 m<sup>2</sup>
- (5) 1111.45 m<sup>2</sup>
- 10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. <u>틀린</u> 것은?
- 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자연수단위까지 면적을 등록한다.
-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등록한다.
- ③ 토지이동 사유 중에 등록전환, 지번변경,지목변경, 합병 등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.
- ④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여 면적측정을 하여야 한다.
-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0분의1일 경우 지적도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1456.55㎡가 산출된 경우에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457㎡이다.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1회 (03/12)

# 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## 1. ⑤

#### 해설:

-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-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,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"산"자를 붙인다.
- ③ 신규등록,지목변경,분할등은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 단, 지적소관청은 합병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④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.

## 2. ⑤

## 해설:

-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·연(蓮)·미나리·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"답"이다.
- ② 일반 공중의 위락·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등의 토지는 "유원지"이다.
- ③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는 '구거'으로 한다.
- ④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, 자갈땅, 습지, 황무지는 "임야"로 한다.

## 3. 4

# 해설:

- ① 온수・약수・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・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 은 "광천지"로 보지아니한다.
- ②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'묘지'이지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'대'로 한다.
- ③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·고적·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'사적지'로 한다.
- 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'주유소용지'로 한다.

#### **4.** (5)

#### 해설:

⑤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·저수·도수(導水)·정수·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'수도용지'로 한다.

#### **5. 4**

## 해설:

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하다.

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1회 (03/12)

### **6.** ②

# 해설:

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위①③④⑤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**7.** (5)

#### 해설:

①②③④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나 ⑤ 경계점표지의 소유자에관한사항은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### **8.** ③

### 해설:

③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.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.1제곱미터로 한다.

### 9. 4

## 해설:

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됩니다.

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<u>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</u>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, 0.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.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.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, 0.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.

그러므로 위 사례의 끝수는 0.05이고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짝수이므로 0.05는 버립니다.

## **10.** (3)

# 해설:

③ 토지이동 사유 중 지번변경, 지목변경, 합병 등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지만 <u>등록전환은 면적측</u>정의 대상이다.